

# 일본에 있어서 세효과회계(稅效果會計)의 전개과정

## An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the Tax Effect Accounting in Japan

고 승 희 (Koh, Seung Hee)\*

### < 개 요 >

일본에 있어서 세효과회계(稅效果會計)의 전개과정은 1975년(昭和50년) 6월에 공표된 「연결 재무제표의 제도화에 관한 의견서」에서 법인세의 기간배분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어서 1976년(昭和51년) 10월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규칙(제 11조)에서도 세효과회계를 임의적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게 하여 회계관행의 효시를 이루었다.

최근에 있어서의 세효과회계의 중심과제는 세금의 선급효과를 나타내는 이연세금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인식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의 이연세금자산을 계상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이연세금자산의 배당규제에 대한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 프롤로그

일본에 있어서의 세효과회계는 1975년(昭和50年) 6월에 공표된 「연결재무제표의 제도화에 관한 의견서」에서 법인세의 기간배분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어서 1976년(昭和51年) 10월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규칙(제 11조)에서도 세효과회계를 임의적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게 하여 회계관행의 효시를 이루었다. 이는 일본기업이 미국과 유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럽의 증권시장에서 예탁증권<sup>1)</sup>을 발행하고 주식상장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증권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국제 회계기준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어, 외국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유용한 투자정보로서 재무보고를 행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래 법인세에 관한 회계에는 납세액방식과 세효과회계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본에서는 납세액방식을 중심으로 적용해 왔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1975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세효과회계의 선택이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의 법인세에 관한 회계처리는 납세액방식을 적용하는 기업과 세효과회계를 적용하는 기업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세효과회계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명확한 회계처리의 지침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기업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이 병존하는 상황이었다(朝日監査法人編, 1997, pp.242). 그래서 법인세에 관한 회계는 무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기업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다(中田信正, 1997, p.48). 일본회계기준의 국제적인 조화를 추진하고 연결재무제표를 글로벌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회계를 세효과회계에 따라 세계적 통일화를 기하는 것이 긴급과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세효과회계의 선택적인 적용이 인정된지 20년이 지난 1997년(平成9년) 6월에 이르러 재무회계의 국제적 조화와 법인세에 관한 재무회계정보의 공시를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심의회」는 「연결재무제표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세효과회계의 본격적인 도입을 천명하였다. 더욱이 1998년(平成10년)10월에는 「세효과회계기준에 관한 의견서」가 공표됨으로써, 일본에 있어서의 세효과회계기준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1998년(平成10년) 12월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재무제표규칙 및 연결재무제표규칙, 그리고 상법의 계산서류규칙이 개정되어 1999년(平成11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세효과회계가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공인회계사협회는 1999년(平成11년) 9월에 「이연세금자산의 회수가능성 판단기준에 관한 감사상의 취급(公開草案)」을 공표하여, 그 판단기준의 실무지침을 명확히 밝혔다. 세효과회계의 전면적인 실시에 따른 실무적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1): 1961년 이후 日立制作所·소니·松下電氣·三菱物産 등의 일본기업들은 미국예탁증권(ADR: American Deposit Receipt)과 유럽예탁증권(EDR: European Deposit Receipt)을 발행해 왔으며, 뉴욕증권거래소를 비롯한 국제적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SEC방식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국의 정보이용자들에게 공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일환으로 세효과회계의 선택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기업에 있어서의 세효과회계는 그 동안 일부의 대기업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임의적용하고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회계상의 과제일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전면적인 실시에 즈음하여 그에 대한 이론적 체계와 계산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기초개념을 인식하고 이론적 기초를 이해함으로써, 세효과회계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세효과회계의 형성과정과 그 계산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논리전개를 추구하고 있다. 즉, 일본형 세효과회계기준의 형성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단계별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제1단계는 일본에 있어서의 세효과회계의 관행이 이루어지던 시기로서 세효과회계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선택적용이 이루어지던 1975년부터 1996년까지를 일컫는다. 제2단계는 일본세효과회계가 제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로서 제도적 형성기에 해당된다.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세효과 회계가 제도적으로 인정된 1997년부터 1998년까지를 일컫는다. 그리고 제3단계는 연결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개별재무제표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세효과회계를 제도화시킨 1999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일본형 세효과회계기준의 확립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일본형 세효과회계의 발전단계별 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 Ⅱ. 일본에 있어서 세효과회계의 태동기

### 2.1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선택적 회계관행

일본에서 세효과회계에 대한 공식적 표명이 있었던 것은 1968년(昭和43년)에 일본공인회계사 협회가 공표한 연구결과를 들 수 있다(日本公認會計士協會, 1968). 그리고 회계학자들에 의한 연구결과<sup>2)</sup>도 발표된 바가 있으나, 그에 따라 세효과회계의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적인 증권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회계기준의 국제화가 요청되면서부터 미국의 회계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세효과회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연결재무제표를 통하여 법인세의 기간배분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게 되었다.

1975년(昭和50년) 6월 24일자 일본의 회계기준 설정주체인 「기업회계심의회」에 의하여 발표된 「연결재무제표의 제도화에 관한 의견서」에서 세효과회계의 임의적인 적용이 인정된 것이다. 즉 동 의견서는 세효과회계가 일본의 회계관행으로서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2): 이무렵의 세효과회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결과로서 발표된 것은 桃山學院大學의 中田信正교수가 저술한 『税金配分會計』(東京, 中央經濟社, 1973)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도, 기업집단내의 거래에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제거에 수반되는 세금의 조정 등은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정보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여, 세효과회계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 의견서는 ADR(미국예탁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SEC(미국증권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미국의 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세효과회계의 관행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75).

그러나 이것은 의견서에 지나지 않았고 법령적으로는 1976년(昭和51년) 10월 30일자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공포된 「연결재무제표규칙」에서 법인세의 기간배분에 관한 규정이 설정됨으로써, 회계관행의 효시가 되었다. 즉, 동 규칙(제11조)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법인세의 기간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세효과회계의 선택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규칙취급요령」(제82조·제83조)은 세효과회계의 적용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상의 표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① 연결손익계산서에서는 「법인세등」의 다음에 「법인세등조정액」을 기재하여 표시하며, ② 연결대차대조표에서는 「법인세등조정액」을 유동자산·투자와 기타자산·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서 그 내용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고 되어 있었다.

세효과회계에 관한 공시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규칙」(제13조) 및 「연결재무제표규칙취급요령」(제33조)에서 ① 법인세등의 기간배분 처리유무, ② 법인세등의 기간배분을 했을 경우의 처리방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따라 일본에서의 세효과회계가 선택적이기는 했지만 하나의 회계관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세효과회계의 실무지침으로서는 일본공인회계사협회가 1976년(昭和51년)에 발표한 「연결재무제표작성요령」(제9)에서 「세금의 기간배분」이라는 지침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그것이 실무수행에 걸잡이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① 세금의 기간배분의 의의, ② 세금의 기간배분을 필요로 하는 예, ③ 세금의 기간배분에 관련된 회계처리, ④ 재무제표상의 표시, ⑤ 세법상 결손금의 취급 및 ⑥ 연결재무제표에 관련된 세효과 등의 여섯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몽적 요소가 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결재무제표작성요령」(제9)에서는 세효과회계의 적용범위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세효과회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선택은 임의적이었다. 그리고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손익법에 의한 방법과 재산법적 방법의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으나,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 세효과회계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를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주기(註記)에 대해서도 지시하였다. 요컨대, 「연결재무제표작성요령」(제9)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함에 있어서 세효과회계의 적용여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실무지침으로서의 미완성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효과회계의 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1977년(昭和52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결회계년도부터 도입되기에 이르렀고 실무적인 회계관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실무관행이 이루어진 초년도와 둘째 년도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중에서 법인세의 기간배분을 적용한 상황을 보면, <표1>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中田信正, 1999, pp.187-188).

<표 1> 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 세효과회계의 적용상황

회계연도 구 분	연결초년도 (1978.3.31~1979.3.30) 결산기도래회사			연결제2년도 (1979.3.31~1980.3.30) 결산기도래회사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합 계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합 계
항 목						
일부적용	47사	4사	51사	47사	3사	50사
전면적용	60	1	61	71	2	73
합 계	107	5	112	118	5	123
연결재무제표 제출회사수			912			952
세효과회계적용율			123%			129%
SEC基準適用의 회사수	39사		39사	39사		39사

자료: 日本・大藏省證券局企業財務課, 「連結財務諸表の提出狀況(第2年度)」(日本公認會計士協會, 『JICPA NEWS』第286号, 1981年 1月), pp. 10-11.

## 2.2 개별재무제표에 의한 세효과회계의 부분적 적용

일본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결재무제표에 한정하여 세효과회계의 선택적 적용이 인정되고 있었을 뿐, 상법에 의한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세효과회계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초까지 다수의 대기업이 「장기성납세충당금」을 계상하여 왔다. 그

것은 재무회계상의 수익과 세무계산상의 이익금에 계상하는 연도에 차이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과세의 이연을 해야 하는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다수의 대기업이 외화표시사채를 발행하고 장기외환예약을 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한 외환차익에 대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재무회계상의 수익계상년도와 세무회계상의 익금산입년도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이는 기간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출현으로 인하여 세효과회계가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1993년(平成5년)까지는 장기외환예약으로 인한 외환차익의 처리가 재무회계에서는 기간배분을 하고 세법에서는 결제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하여 재무회계상에서 그에 대한 장기납세충당금을 계상하게 된 것이다. 그 근거는 다음에 기인한다. 1979년(昭和54년) 6월 26일자로 일본의 「기업회계심의회」가 「외화표시거래등의 회계처리기준」을 공포하여 외환예약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차익에 대해서는 외환예약년도부터 결제년도까지 기간배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장기외환예약으로 인한 외환차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결제년도에 일괄하여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정의 차이가 결국 장기납세충당금의 설정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3년(平成5년)의 세계개혁시 세법에서도 장기외환예약으로 인한 외환차익을 기간배분하여 이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재무회계와 세법과의 사이에 차이가 제거되어서 장기납세충당금의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장기납세충당금은 개별재무제표에 의한 세효과회계의 부분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中田信正·坂本道美, 1999, pp.15-16; 森田政夫, 2000, pp.54-56).

일본에서 세효과회계의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던 1990년(平成3년)을 전후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시중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 세효과회계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자기자본비율규칙과 연관시켜 자기자본비율의 산정에 세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시중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시작된 세효과회계의 적용은 「버블」불경기시대의 불량채권산각에 즈음하여 개별재무제표에 세효과회계를 도입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회계정보의 공시기능 확대와 그에 수반하는 회계정보의 국제적 동질성에 대한 요청이 크게 작용하고 있던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다.

일본의 시중은행에서 세효과회계를 적용하게 된 것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회계처리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관하여 규제당국이나 예금자 및 투자

자에게 국제적 수준에 합당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각국의 은행 사이에는 세효과를 적용하는 경우와 세효과를 적용하지 않은 은행의 경우,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경영지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여러 은행에서 세효과회계를 적용함으로써 상당한 이연세금자산이 발생하였는 바, 그 원인으로서는 불량채권의 상각을 위한 대손충당금이 세금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즉, 세무상에서는 대손확정에 따라 손금산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재무회계에서는 대손확정 이전단계에서 회수불능예상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시중은행에서 이연세금자산을 계상한 것은 자기자본비율의 산정에 BIS기준<sup>3)</sup>이 필요했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中田信正, 1999, pp. 195-204).

### 2.3. SEC기준에 의한 일본기업의 세효과회계관행

일본기업에 있어서의 세효과회계의 관행은 증권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미국의 증권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던 데서 비롯된다. 즉, 일본기업이 미국의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SEC기준은 구체적으로 FASB(재무회계기준심의회)의 재무회계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SEC기준에는 세효과회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SEC기준을 적용해온 일본기업은 오랫동안 이에 의한 세효과회계를 관행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더욱이 SEC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는 1975년 이후부터 일본의 증권거래법에 의해 제출되는 연결재무제표로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75).

이와 같이 일본의 일부기업에서 SEC기준에 의한 세효과회계의 적용은 일본의 회계학자들이나 공인회계사 및 회사의 경리담당자들로 하여금 세효과회계의 이론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였고 관행적 습속도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1997년과 1998년에 일본형 세효과회계기준을 설정하게 하는 환경조성의 근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일본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하여 작성된 세효과회계의 상세한 실무지침을 일본의 대기업과 감사법인들이 다년간 SEC기준을 적용

3) BIS기준이라 함은 스위스의 바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규정한 기준으로서, 국제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제의 기준을 일컫는다. 1992년말 이후의 BIS기준은 자기자본비율 8%이상으로 되어 있다. BIS기준의 목적은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 국가간의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실천함으로써, 습득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中田信正, 1999, p.205).

SEC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던 일본기업이 1994년(平成6년) 3월기부터 당시의 신기준인 FASB기준서 제109호에 준거하고 있었음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하나의 예로서 송하전기산업(주)이 1994년(平成6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세효과회계에 관한 적용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松下電器産業(주), 1994). 즉, 松下電器産業(주)의 연결재무제표는 SEC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었으며 「회계방침의 개요」라는 주기(註記)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세효과회계에 관한 처리기준이 APB의견서 제 11호에서 FASB기준서 제109호로 변경된 사실도 「회계방침의 개요」라는 주기사항에서 「법인세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92년(平成4년) 2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심의회는 기준서 제109호(법인세등의 회계처리)를 공표하였다. 이 기준서 제109호에서는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의 계상액과 그에 대응하는 세무적인 금액과의 차액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세효과는 이연세금자산 및 부채로 인식된다. 당사는 1993년(平成5년)부터 이 기준서 제109호를 적용하여 1988(昭和63년)까지 소급수정하였다.」고 그 당시에 있어서 본격적인 세효과회계의 적용상황을 APB의견서(제11호)로부터 FASB기준서(제109호)로 이행처리한 사실까지도 포함시켜 기재하고 있음은 미국회계기준의 영향이 세효과회계의 일본적 관행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Ⅲ. 세효과회계의 제도적 형성

#### 3.1 개 설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연결재무제표의 임의적인 선택을 중심으로 점차 회계관행화한 세효과회계는 제도화를 향하여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의 심각한 「버블」경제로 인하여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재구축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일본의 회계제도를 국제기준에 일치시키는 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일본형 세효과회계제도의 형성은 1996년(平成8년)부터 1999년(平成11년)에 이르는 기간동안에 이루어졌다. 그 첫단계로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세효과회계제도가 형성되었고, 그 다음단계로 개별재무제표에서도 도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는 그 첫 단



계에 해당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세효과회계의 도입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에 의한 세효과회계기준의 확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일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 3.2 세효과회계제도의 본격적 도입

일본의 「기업회계심의회」는 1996년(平成8년) 6월 21일자의 총회에서 「연결재무제표의 논점 정리」라는 의제를 통하여 세효과회계의 도입을 추진하도록 주장하였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6, p.142). 즉, 세효과회계의 선택적인 적용으로 실무에서는 부적용, 일부적용 및 전면적용이 혼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회계상에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간 비교가능성의 관점에서도 회계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효과회계의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회계심의회」의 움직임은 기업환경의 세계화 속에서 재무회계의 국제적인 조화가 필요함을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97년(平成9년) 2월에 「기업회계심의회」는 「연결재무제표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서(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일본기업의 집단화·국제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연결정보에 의한 공시제도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내외의 광범위한 투자자들이 적절한 투자의 사결정을 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의 연결재무정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개선의 일환으로서 세효과회계의 제도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하여 세효과회계가 선택적인 회계관행으로부터 기준설정을 위한 제도화의 길로 급진회하게 된 것이다.

동 의견서의 공개초안에서 제시된 세효과회계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① 세효과회계를 연결재무제표원칙에 반영하여 제도화하되, 자산부채법에 의한 처리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② 세효과회계의 적용범위는 재무회계와 세법과의 차이(일시적 차이)를 대상으로 하며 강제화한다는 것이다. ③ 일시적 차이에 의한 세금액은 이연세금자산 또는 이연세금부채로 계상하며, 이연세금자산에 대해서는 그 실현가능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장래의 회수가능성을 매기마다 점검한다. ④ 연결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법인세등」에 사업세액을 포함시킨다. ⑤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효과회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제도화가 추진되었다.

### 3.3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세효과회계기준의 형성

상술한 공개초안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심의회」는 수차의 심의과정을 거친 다음, 1997년(平成9년) 6월 6일에 「연결재무제표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공표하였다. 여기에 반영된 세효과회계의 내용은 표현에 차이는 약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개초안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연결재무제표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서」에서는 연결정보의 공시를 강조하였고 개별재무제표로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는 공시체도로 전환함과 동시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원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결재무제표원칙의 개정에 대한 기본사상으로는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집단에 관한 보다 적절한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21세기를 향한 활력있고 질서있는 증권시장의 확립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7).

동 의견서의 기본적 입장은 회계와 세법과의 사이에 그 인식시점에서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적절하게 기간배분하기 위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래의 세효과회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분적용이나 전면적용 등 회계질서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아 전면적인 적용을 제도화하기로 했음을 찾아 볼 수 있다(上掲意見書, 第二部·二·3·(2)).

세효과회계의 적용방법으로서는 자산부채법과 이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산부채법이 채택되었다. 이연법은 재무회계와 세법상의 차이가 발생한 연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를 대응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차이발생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세율변경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것은 이연세금의 자산성과 부채성을 명백히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비판이 있는 방법이다. 이에 대하여 자산부채법은 재무회계와 세법상의 차이를 기초로 하여 표시되는 이연세금의 자산성과 부채성을 중시하는 방법이다. 현재로는 국제적으로도 자산부채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서」에서도 자산부채법은 세율변경에 따라서 이연세금자산 또는 이연세금부채의 회수액이나 지급액을 보다 적절하게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하여 그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上掲意見書, 第二部·二·3(3)).

### 3.4 연결재무제표원칙의 세효과회계규정

1997년(平成9년) 6월 6일자의 「연결재무제표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서」와 함께 「기업회계심의회」에 의해 개정된 「연결재무제표원칙」은 「제사·연결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에서 「칠·세

효과회계」라는 항목을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① 세효과회계의 적용, ② 일시차이의 정의 및 ③ 이연세금자산·이연세금부채의 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 3.4.1 세효과회계의 적용

일본의 개정 연결재무제표원칙은 연결회사의 법인세 기타이익에 관련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일시차이에 관련되는 세금액을 기간배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그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세 기타이익에 관련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경우, 법인세·법인주민세 및 법인사업세를 포함한 의미이다. 개정전에는 사업세는 연결손익계산서에서 영업비용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7년(平成9년) 6월 6일에 「연결재무제표원칙」이 개정되면서, 세금등의 조정전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된 「법인세등」에는 주민세 및 이익에 관련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업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달라졌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7).

그리고 「일시차이에 관련되는 세금액을 기간배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인세등」의 회계는 세효과회계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정전의 원칙에서 이용하고 있던 납세액방식<sup>4)</sup>을 지양하고 세효과회계의 적용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4.2 일시차이의 정의

재무회계와 세법계산과의 차이에는 영구차이와 일시차이가 있으나, 영구차이는 양자간의 절대적 차이로서 세효과회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시차이 대해서만 세효과회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개정된 「연결재무제표원칙」에서는 영구차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일시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일시차이라 함은 「연결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과 「과세소득계산의 결과로 산정된 자산 및 부채의 금액」과의 차액을 일컫는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7).

그리고 일시차이의 예를 「연결재무제표원칙주해」에서 밝히고 있으며 장래의 과세소득과 상쇄

4): 「납세액방식」이라 함은 당기에 필요한 세금의 납부액을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등」의 계상액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가능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일시차이와 같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일시차이의 예로는 ① 수익 또는 비용의 귀속년도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 연결회사의 과세소득 합계액」과 「연결재무제표상의 세금 등 조정전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이 있다. 또한 ② 종속회사의 자산 및 부채가 시가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액 중에서 과세소득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일시차이로 본다는 것이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7).

### 3.4.3 이연세금자산과 이연세금부채의 계상

일시차이에 관련되는 세금액은 이연세금자산이나 이연세금부채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장래의 연결회계기간에 회수 또는 지급될 가능성이 없는 세금액에 대해서는 이연세금자산이나 이연세금부채로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7, 第四·七·3).

이연세금자산이나 이연세금부채의 금액은 회수 또는 지급이 가능한 기간의 세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연세금자산에 대해서는 장래의 회수가능성을 매기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중요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시차이에 대해서는 이연세금자산이나 이연세금부채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7).

## 3.5 일본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한 실무지침

1998년(平成10년) 5월, 일본공인회계사협회는 회계제도위원회의 보고 제6호(「연결재무제표의 세효과회계에 관한 실무지침」: 중간보고)를 공표하였다. 그 구성내용은 3부로 되어 있으며 미국의 FASB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그것과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형 세효과회계의 기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① 법인세의 비용성, ② 일시차이의 유형, ③ 개별 재무제표에 관련된 일시차이의 회계처리, ④ 이연세금자산의 회수가능성, ⑤ 연결절차상 발생한 일시차이의 회계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3.5.1 법인세의 비용성과 발생주의

세효과회계의 출발점은 법인세의 비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일본공인회계사협회가 공표한 실무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인세의 비용성을 정의하고 있다. 즉 그 실무지침에 의하면,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와 같이 이익에 관련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은 회계상 과세소득의

원천이 되는 거래나 사상(事象)을 발생시킨 기간에 계상해야 할 비용이다。」(日本公認會計士協會, 1998)라고 명확히 법인세등의 비용성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이 정의는 법인세의 비용성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법인세의 비용인식을 발생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납세에 관한 법적인 권리의무의 확정시에 법인세등을 계상하는 종래의 납세액방식을 지양하여, 과세소득의 원천이 되는 거래나 사상의 발생시에 법인세등을 계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세효과회계의 적용을 통하여 이연세금자산과 이연세금부채가 대차대조표에 계상될 뿐만 아니라, 세금비용에 대해서는 당기의 법인세로 납부해야 될 금액과 법인세조정액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中田信正, 1999, p.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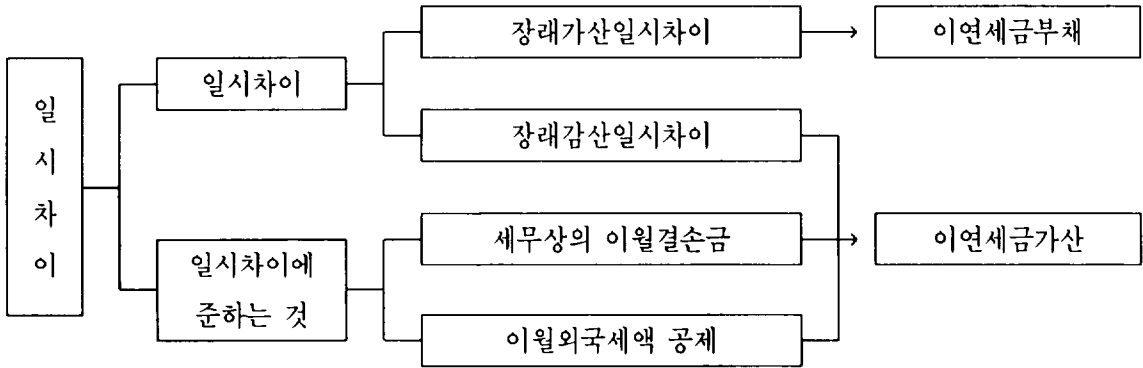
특히 상술한 실무지침(제65항)에서는 세효과회계의 방법으로서 「자산부채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이연세금자산의 자산성과 이연세금부채의 부채성을 그 인식의 출발점으로 하여, 이연세금자산 및 이연세금부채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증감액에 의한 「법인세조정액」을 계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中田信正, 1999, p.224).

### 3.5.2 일시차이의 유형과 회계처리지침

세효과의 원인이 되는 일시차이에 대하여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실무지침」은 그 유형과 회계처리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무지침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시차이는 크게 나누어 ① 장래에 감산될 일시차이, ② 장래에 가산될 일시차이, 및 ③ 일시차이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장래에 감산될 일시차이는 차이가 발생한 때에 과세소득에 가산하였다가 차이가 해소되는 장래에 과세소득으로부터 감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장래에 가산될 일시차이는 차이발생년도의 과세소득에서 감산되며 장래 차이해소년도의 과세소득에 가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차이에 준하는 것은 다시 세무상의 이월결손금과 이월외국세액공제로 나누어진다. 세무상의 이월결손금은 이월기간에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되는 경감효과가 있으며 발생년도에 이연세금자산으로 계상하게 된다. 외국세액공제한도액을 초과함으로써, 이월외국세액공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내의 이월가능한 기간에 발생하는 외국세액공제여유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월외국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이연세금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다(日本公認會計士協會, 1998). 이것을 체계화시켜 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 1> 일시차이의 유형



자료: 中田信正, 『稅効果會計詳解』(東京, 中央經濟社, 1999), p. 225.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장래감산일시차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이월외국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이연세금자산으로 기재하고, 장래가산일시차이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이연세금부채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실무지침(제17항)은 이연세금자산 및 이연세금부채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에서 비롯된 차액을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조정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3.5.3 이연세금자산의 회수가능성

「실무지침」(제22항)은 이연세금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장래감산일시차이와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이연세금자산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차이가 해소되는 기간에 있어서 과세소득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이연세금자산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판단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익력을 기초로 하여 차이해소년도의 과세소득이 충분히 존재할 것.
- ②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고정자산매각과 유가증권매각 등에 대한 세무계획이 존재할 것.
- ③ 차이해소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가져오는 장래가산일시차이가 존재할 것.

이연세금자산에 대해서는 그 실현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연세금자산의 회수가능액을 한도로 하여 계상함과 동시에, 그 회수가능성을 매 결산기마다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월외국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그 실현가능액을 이연세금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즉, 차기 이후에 외국세액공제

를 위한 여유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만 이연세금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그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연세금자산을 감액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하여 공표된 「실무지침」의 요점을 간단히 소개하였지만, 거기에는 세효과회계에 관한 이론적·실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실제로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실무지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여겨진다.

## IV. 일본형 세효과회계기준의 확립

### 4.1 개 설

세효과회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재무제표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1996년(平成8년)까지의 일본에서는 연결재무제표에만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세효과회계가 적용될 수 없었다. 그래서 회계처리의 모순과 불합리성이 강하게 지적되어 왔었다.

개별재무제표에 세효과회계를 도입하는 문제는 1997년(平成9년) 6월의 「연결재무제표의 개선에 관한 의견서」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윽고 1998년(平成10년) 6월 16일에 법무성과 대장성의 공동연구회는 「상법과 기업회계의 조정에 관한 연구회보고서」를 발표하여 세효과회계의 필요성을 상법이 인정하게 됨으로써 개별재무제표에 그것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연구보고서가 발표된지 2일 후인 6월 18일에 「기업회계심의회」는 「세효과회계에 관련된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公開草案)」를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공개초안을 기초로 하여 검토를 행한 다음, 1998년(平成10년) 10월 30일자로 기업회계심의회는 「세효과회계에 관련된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이하 세효과 회계기준 설정의견서라고 칭함)를 발표하고 개별재무제표에 세효과회계의 도입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1999년(平成11년)에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의 작성시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기준으로서의 일본형 세효과회계기준이 드디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여기서는 1998년 이후의 세효과회계에 대한 제도화가 확립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4.2 재무제표상 법인세회계의 불합리성

일본에 있어서 세무회계의 적용에 관한 문제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와의 사이에 법인세의 회계처리가 각각 다르게 이루어짐으로써, 상호모순을 안고 있었다.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세효과회계가 인정되지 않고 납세액방식을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서 세효과회계를 적용하는 회계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세효과회계를 적용하는 회계는 개별재무제표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와의 사이에 서로 왜곡된 내용을 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에 개별재무제표에 의한 개별이익과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연결이익 중 어느 쪽이 비교가능성을 지닌 당기의 경영성적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물론 세효과회계를 적용한 연결이익을 가리키게 된다. 당기에 있어서의 불량채권에 대한 유세상각(대손상각의 손금불산입)은 대손의 확정과 동시에 차기 이후의 손금으로 산입된다. 그 결과, 차기 이후에 법인세납세액이 감소하고 개별재무제표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비하여 적은 법인세액이 계상되기 때문에 개별이익은 과대하게 표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세효과회계가 적용되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차기 이후에 이연세금자산을 감액하여 법인세조정액으로 법인세비용에 가산하기 때문에, 세금조정권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비용으로서의 조정후 법인세액이 대응하게 되어 당기의 경영성적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산정될 수 있는 것이다(中田信正, 1999, pp.232-234).

이와 같이 개별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법인세의 회계처리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회계처리이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정보의 차이점이 문제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효과회계는 재무회계에 있어서 법인세의 회계처리에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연세금의 발생원인이 되는 일시차이의 대부분은 개별재무제표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정에서만 발행하는 문제는 아니다. FASB기준서 제109호와 국제회계기준 제12호는 모두가 재무회계 전체에 적용되는 세효과회계기준임을 감안할 때, 연결재무제표에 한정된 세효과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던 일본의 그것은 미완성의 회계제도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개별재무제표에 세효과회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제도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과 기업회계의 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세효과회계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4.3 세효과회계의 전면제도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 4.3.1 상법과 기업회계의 조정에 관한 보고서

1997년(平成9년) 7월부터 일본의 법무성과 대장성(한국의 재정경제부에 해당함)이 공동으로 시가평가의 도입과 세효과회계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한 후, 1998년(平成10년) 6월 16일자로 「상법과 기업회계의 조정에 관한 연구회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상법이 계산규정과 회계기준의 위상을 정립하고 일본상법(제32조 제2항)의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해석은 공정한 회계관행을 참작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기업회계원칙」이 「공정한 회계관행」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상법의 계산규정과 기업회계와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양자가 함께 일본의 회계실무를 형성시켜왔음을 평가하고 있다(法務省·大藏省共同研究會, 1998).

이러한 기본인식을 기점으로 하여, 동 보고서는 세효과회계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기업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를 언급하고 양자 간에 손익의 인식시기가 일시적으로 어긋남에 따라 일시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로 기업회계상의 법인세가 세전리익에 기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을 지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법인세의 귀속년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실은 기업회계상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즉, ① 장래의 기간이익과 대응하게 될 세금액으로서 당기에 지급해야 하는 선급세금과 같은 것, 그리고 ② 당기의 이익에 대응시켜야 할 세금액으로서 장래에 지급하게 되는 미지급세금에 상당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들 세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의한 비교가능성이 손상된다는 것이다. 세법상 손금산입액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일시차이가 증가하게 되므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회계상의 이익이 적정하게 표시되도록 조정하는 세효과회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효과회계는 연결재무제표만이 아니라, 개별재무제표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세효과 조정의 상법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를 동 보고서는 분명히 제시하였던 것이다(法務省·大藏省共同研究會, 1998).

#### 4.3.2 이연세금의 대차대조표능력

선급세금에 해당하는 것과 미지급세금에 해당하는 것과는 상쇄되어서, 선급세금액이 많을 경우

에는 이연세금자산으로 계상하고, 미지급세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이연세금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서 이연세금자산과 이연세금부채의 대차대조표능력이 문제가 된다. 즉, 이연세금자산의 자산성과 이연세금부채의 부채성이 인정되고 이들 항목이 대차대조표에 계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상에 제도적으로 세효과회계기준이 설정되어 이들 항목의 자산성과 부채성이 확정되어지게 되면, 상법상에서도 공정한 회계관행을 참작한다는 입장에서 이연세금자산과 이연세금부채가 대차대조표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견해가 나타나 있다(法務省·大藏省共同研究會, 1998).

#### 4.4 세효과회계기준의 제도적 확립

##### 4.4.1 세효과회계의 목적

일본의 「기업회계심의회」는 1998년(平成10년) 6월 18일에 「세효과회계에 관련된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의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10월 30일에는 수정보완한 「의견서」를 정식으로 공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개별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중간재무제표 및 중간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세효과회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포괄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의견서」에 따라 제정된 세효과회계기준과 그 주해서(註解書)가 공표됨으로써, 일본의 세효과회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세효과회계는 기업회계상의 자산·부채의 금액과 과세소득계산상의 자산·부채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 법인세를 적절하게 기간배분함으로써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를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법이다. 이 경우의 법인세액은 법인세·주민세 및 사업세를 포함시켜 계산된 것이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8).

##### 4.4.2 일시차이의 인식

일시차이라 함은 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의 금액과 과세소득계산상의 자산·부채의 금액과의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일컫는다. 따라서 일본의 세효과회계기준에서는 일시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8).

- ① 개별재무제표상의 일시차이는 손익의 귀속년도가 상이한 경우의 자산평가에 의하여 자본의 부에 계상되고 과세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것을 일컫는다.
- ② 연결재무제표 고유의 일시차이는 자본연결에 즈음하여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를 시가평가

함으로써 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또는 연결회사간에 채권채무를 상쇄제거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이 감액된 경우의 것을 일컫는다.

그리고 세효과회계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일시차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8).

③ 장래에 감산될 일시차이로서, 이것은 일시차이가 해소되는 다음 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액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 및 손금불산입의 재고자산평가손실 등이 있다.

④ 장래에 가산될 일시차이로서, 이것은 일시차이가 해소되는 다음 기간의 과세소득을 증액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익처분에 의한 조세특별조치법상의 준비금 등이다.

⑤ 이월결손금으로서 장래의 과세소득과 상쇄가능한 이월결손금 등은 장래감산일시차이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 4.4.3 이연세금의 계상방법

##### (1) 이연세금자산의 계상

장래감산일시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에 관련되는 세금액은 차기에 회수불가능한 세금액을 제외하고 이연세금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이연세금자산에 대해서는 그 계상을 신중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장래의 회수 가능성에 대하여 매기마다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연세금자산은 장래감산일시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이 해소되면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고 세금부담액이 경감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8).

##### (2) 이연세금부채의 계상과 적용세율

장래가산일시차이에 관련되는 세금액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지급할 수 없는 세금을 제외하고 이연세금부채로 계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연세금자산과 이연세금부채의 금액은 회수와 지급이 가능한 年度の 세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에 계상한 이연세금자산 및 이연세금부채를 새로운 세율에 따라 다시 계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8).

### (3) 법인세조정액의 計上 및 평가차액에 대한 세효과

이연세금자산과 이연세금부채와의 차액은 당기의 납부에 필요한 법인세조정액으로 계상하게 된다. 세율의 변경에 따라 이연세금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차액을 법인세조정액으로 가감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8).

그리고 자산평가에 의한 평가차액이 자본의 부에 계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차액에 관련된 이연세금을 평가차액으로부터 공제하여 계상해야 한다. 특히 자본연결에 즈음하여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한 경우의 평가차액에 대해서는 평가차액에 관련된 이연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종속회사의 자본에 계상한다. 세율의 변경에 따라 이연세금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차액을 평가차액에 가감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8).

#### 4.4.4 이연세금의 표시방법

이연세금자산은 관련자산의 분류에 따라 유동자산·투자와 기타자산으로 표시해야 된다. 다만, 이월결손금에 관련된 이연세금자산에 대해서는 차기에 해소가능한 것은 유동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이외의 것은 투자와 기타자산으로 표시하게 된다. 이연세금부채에 대해서는 관련된 자산·부채의 분류에 따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8).

더욱이 유동자산에 속하는 이연세금자산과 유동부채에 속하는 이연세금부채는 서로 상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와 기타자산에 속하는 이연세금자산과 고정부채에 속하는 이연세금부채는 역시 상쇄하여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 상이한 납세주체의 이연세금자산과 이연세금부채는 원칙적으로 상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의 법인세의 표시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부터 당기에 납부할 법인세액과 법인세조정액을 구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에 의하고 있다(日本·企業會計審議會, 1998).

#### 4.4.5 시행시기

일본의 「기업회계심의회」에 의하여 공표된 세효과회계기준은 1999년(平成11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물론, 그 이전의 조기적용도 인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세효과회계의 적용은 유세(有稅)에 의한 불량채권상각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中田信正, 1999, p.240).

## 4.5 세효과회계의 실무지침

연결재무제표에 세효과회계가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일본공인회계사협회가 1998년(平成10년) 5월에 「연결재무제표의 세효과회계에 관한 실무지침」을 중간보고의 형식으로 발표하여 그 제도화에 일조한 바가 있었다. 그 후 세효과회계의 전면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자, 일본공인회계사협회는 1998년(平成10년) 12월 22일에 회계제도위원회보고 제10호로 「개별재무제표의 세효과회계에 관한 실무지침」을 공표하였다. 이윽고 1999년(平成11년) 1월 19일에는 회계제도위원회보고 제11호로 「중간재무제표의 세효과회계에 관한 실무지침」이 공표됨으로써, 세효과회계의 전면적인 실시로 인한 구체적인 실무처리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길잡이의 역할도 기대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세효과회계의 실무지침은 연결재무제표·개별재무제표 및 중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개별재무제표에 있어서의 세효과회계의 실무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을 소개하는 데 그치려고 한다.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구체적인 설례(設例)를 제시하여 실무처리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점이다. 다음에 실무지침의 구성내용을 소개한다.

### ① 세효과회계에 관한 실무지침(제1항~제34항)

- 1) 세효과회계의 의의
- 2) 일시차이
- 3) 일시차이 등의 회계처리
- 4) 이연세금자산 및 이연세금부채의 표시
- 5) 적용초년도에 있어서 세효과회계의 처리
- 6) 적용방법

### ② 결론의 배경(제35항~제50항)

#### ③ 설례(設例)에 의한 해설

- 1) 설례1: 이연세금자산과 이연세금부채의 계산
- 2) 설례2~5: 이익처분방식에 의한 조세특별조치 상의 제준비금의 세효과
- 3) 설례6: 이연세금자산의 회수가능성 판단
- 4) 설례7: 이월외국세액공제의 세효과

5) 설례8: 세효과회계에 관한 주기에(註記例)

※ 별지: 이익처분방식에 의한 제준비금등의 종류별 명세표

## 4.6 회계관련규정의 개정과 세효과회계제도의 확충

### 4.6.1 재무제표규칙의 개정과 세효과회계의 적용

일본·대장성은 1998년(平成10년) 12월 21일에 세효과회계의 본격적인 도입·정착을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근거를 갖고 있는 「재무제표규칙」·「연결재무제표규칙」 및 「중간재무제표 규칙」을 개정하였다.<sup>5)</sup> 이 개정을 통하여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공개법인에게도 세효과회계의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회계에 있어서 세효과회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재무제표규칙과 연결재무제표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세효과회계에 관련된 항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6)</sup>

- ① 세효과회계의 적용(「규칙」 제8조의 11; 「연결규칙」 제11조)
- ② 세효과회계에 관한 주기(「규칙」 제8조의 12; 「연결규칙」 제15조의 5)
- ③ 유동자산(이연세금자산)의 구분표시(「규칙」 제17조; 「연결규칙」 제23조)
- ④ 투자와 기타자산(이연세금자산)의 구분표시(「규칙」 제32조; 「연결규칙」 제30조)

- 5) 일본의 증권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무제표규칙은 1963년(昭和38년) 11월 27일에 대장성령 제59호로 공표된 「財務諸表等の用語・様式および作成方法に關する規則」을 일컫는 것으로서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1999년(平成11년) 5월 19일에 최종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결재무제표규칙은 연결제도의 도입과 함께 1976년(昭和51년) 10월 30일에 제정·공포된 「連結財務諸表の用語・様式および作成方法に關する規則」을 말하며, 1999년(平成11년) 4월 16일에 최종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재무제표규칙은 중간결산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1977년(昭和77년) 8월 30일 대장성령 제38호로 제정된 「中間財務諸表等の用語・様式および作成方法に關する規則」이며, 최근개정은 1999년(平成11년) 4월 16일에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중간연결재무제표규칙은 1999년(平成11년) 3월 30일에 대장성령 제124호로 제정되고 이윽고 동년 4월 16일 대장성령 제53호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中間連結財務諸表の用語・様式および作成方法に關する規則」을 일컫는다. 이들 4개의 회계관련규정은 모두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법시행령에 근거를 갖고 있는 것들로서, 공개법인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이다. 일본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공개법인은 이들규정에 의하여 회계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6) 여기서는 재무제표등규칙을 「규칙」으로 생략하여 표시했으며, 연결재무제표규칙에 대해서는 「연결규칙」으로 생략·표시하였다.

- ⑤ 유동부채(이연세금부채)의 구분표시(「규칙」 제49조; 「연결규칙」 제37조)
- ⑥ 고정부채(이연세금부채)의 구분표시(「규칙」 제52조; 「연결규칙」 제38조)
- ⑦ 이연세금자산 또는 이연세금부채의 표시(「규칙」 제54조; 「연결규칙」 제45조)
- ⑧ 법인세등의 기재(「규칙」 제59조의 5; 「연결규칙」 제65조)

더욱이 「중간재무제표규칙」 뿐만 아니라 1999년(平成11년) 3월 30일에 제정되어 동년 4월 16일에 개정·공포된 「중간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도 세효과회계의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음에 언급하는 상법에 의한 규정과 더불어 일본에 있어서 세효과회계의 전면적인 제도화가 확립된 것이다.

#### 4.6.2 계산서류규칙의 개정과 세효과회계의 적용

세효과회계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일본·법무성은 1999년(平成10년) 12월 21일에 상법에 근거를 갖고 있는 「계산서류규칙」을 개정하였다.<sup>7)</sup> 이것은 일본·대장성이 증권거래법에 근거한 재무제표 관련 제규칙을 개정한 것과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이며 세효과회계의 전면적인 제도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계산서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세효과회계의 주요항목은 다음에 발췌·제시하는 바와 같다.

- ① 유동자산으로 기재하는 이연세금자산(동규칙 제13조의 2)
- ② 투자자산으로 기재하는 장기 이연세금자산(동규칙 제19조의 2)
- ③ 유동부채로 기재하는 이연세금부채(동규칙 제29조의 2)
- ④ 고정부채로 기재하는 장기이연세금부채(동규칙 제30조의 2)
- ⑤ 이연세금자산 및 이연세금부채의 기재방법(동규칙 제33조의 2)
- ⑥ 법인세등의 기재방법(동규칙 제43조)

이상과 같이 「계산서류규칙」의 세효과회계에 관한 규정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재무제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의 것이다. 세효과회계의 전면적인 제도에 즈음하여 일본내의 「기업회계원칙」을 비롯한 각종 회계관련규정 등의 제도적 적용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계산서류규칙」은 일본의 상법(제281조)에 근거를 둔 「株式會社の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營業報告書及び附屬明細書に關する規則」으로서 1963년(昭和38년) 3월 30일 일본법무성령(제31호)로 제정·공포되어 여러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세효과회계의 제도적인 도입과 더불어 1998년(平成10년) 12월 21일에 일본법무성령 제53호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 V. 에필로그 - 일본 세효과회계제도의 행방 -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임의선택을 통하여 회계적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던 일본의 세효과회계가 재무회계기준으로서 제도화된 것은 1990년대의 후반의 일이다. 이 무렵에 일본 세효과회계제도의 형성이 진행된 주요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1997년(平成9년) 2월 7일: 「기업회계심의회」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서안(공개초안)」의 발표.
- ② 1997년(平成9년) 6월 6일: 「기업회계심의회」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서」가 정식으로 공표되어 세효과회계의 부분적 제도화가 실현됨.
- ③ 1998년(平成10년) 5월 12일: 일본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세효과회계에 관한 실무지침」이 동협회의 회계제도위원회보고 제6호로 중간보고가 이루어 짐.
- ④ 1998년(平成10년) 6월 16일: 일본의 법무성·대장성 공동연구회의 「상법과 기업회계의 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세효과회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⑤ 1998년(平成10년) 6월 18일: 「기업회계심의회」의 「세효과회계에 관련된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가 공개초안으로 발표됨.
- ⑥ 1998년(平成10년) 10월 30일: 「기업회계심의회」의 「세효과회계에 관련된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가 공표됨.
- ⑦ 1998년(平成10년) 12월 21일: 세효과회계에 관련된 증권거래법의 재무제표규칙 및 상법의 「계산서류규칙」이 개정되다. 따라서 1999년 4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년도(중간재무제표의 경우는 2000년 4월 1일 이후 개시사업년도)부터 시행됨. 1999년(平成11년) 1월 결산기부터의 조기적용도 인정됨.
- ⑧ 1998년(平成10년) 12월 22일: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회계제도위원회보고 제10호로 「개별재무제표의 세효과회계에 관한 실무지침」이 공표됨.
- ⑨ 1999년(平成11년) 1월 19일 일본공인회계협회의 회계제도위원회보고서 제11호로 「중간재무제표의 세효과회계에 관한 실무지침」이 중간보고됨.
- ⑩ 1999년(平成11년) 3월 30일: 대장성에 의한 「중간연결재무제표규칙」의 제정으로 세효과회계의 전면적인 제도화가 실현되었음.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일본형 세효과회계의 제도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상법과 기업회계



의 조정에 관한 연구회보고서」가 공정한 회계관행을 참작한다는 입장에서 세효과회계의 관행을 인정함으로써, 개별재무제표에 있어서의 세효과회계의 도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회보고서가 발표된지 이틀 후 「기업회계심의회」가 「세효과회계기준의 공개초안」을 공표한 것을 보더라도 그 신속한 대응의 분위기를 인식할 수 있다.

최근에 있어서의 세효과회계의 중심과제는 세금의 선급효과를 나타내는 이연세금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인식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의 이연세금자산을 계상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이연세금자산의 배당규제에 대한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연세금자산과 배당규제의 문제를 고려할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는 「경영성과정보로서의 이익」과 「분배가능액으로서의 이익」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경영성과정보로서의 이익수치」와 「분배가능액」을 적극적으로 분리하려는 것이다(中田信正, 1999. p.247).

세효과회계를 적용하는 목적은 기업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의 공시를 충실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것은 투자정보로서의 주당순이익, 주주자본이익률(ROE), 규제지표로서의 자기자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의 정보공시기능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는 이익분배후의 재무상태에 대한 문제를 중시하는 배당하는 배당가능도액의 산정을 분리해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익수치나 유보이익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하여 배당가능도액을 산정하면, 정보공시기능과 채권자보호기능을 위한 목적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불량채권의 유세상각과 연금부채에서 기인되는 이연세금자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연세금자산의 인식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계상된 이연세금자산과 배당가능도액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업재무의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할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독일에서와 같이 개별대차대조에 계상된 이연세금자산을 배당제한항목으로 하여 배당가능도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郡司 健, 「稅效果會計現狀」, 1994; 中田信正, 1999, pp.247-248).

한편 세효과회계에 관한 증권거래법의 「재무제표규칙」과 상법의 「계산서류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1999년(平成11년) 1월 결산기부터의 조기적용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세효과회계의 조기적용을 실시한 은행과 기업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은행의 경우는 그 기간에 거액의 불량채권을 상각하고 상당한 액수의 이연세금자산을 계상하였던 것이다.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세효과회계를 도입한 17개 은행의 이연세금자산액은 도합 6조6,107억엔에 이르렀으며, 자본계정에 대한 이연세금자산의 비율은 평균 30% 정도였다. 그 중에서는 자본계정의 70% 이상을 이연세금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日本經濟新聞, 1999). 특히 지방은행의 결산공고에서는 자본계정에 비하여 이연세금자산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은행도 있어서 세효과회계의 적정한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한다(中田信正, 1999, p.248).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감사위원회는 1999년(平成11년) 9월에 「이연세금자산의 회수가능성 판단에 관한 감사상의 취급」이라는 공개초안을 공표하여 엄격한 판단지침을 작성하도록 한 바가 있다(日本公認會計士協會, 1999, pp.33-36; 中田信正, 1999, pp.248-249). 따라서 앞으로의 일본형 세효과회계의 행방은 이연세금자산의 인식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배당제한과 시가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세효과회계와의 관계정립에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日本・企業會計審議會, 「連結財務諸表の制度化に関する意見書」, 1975.
- \_\_\_\_\_, 「連結財務諸表制度の見直しに関する意見書」, 1997. 6.
- \_\_\_\_\_, 「稅効果會計に係る會計基準の設定に関する意見書」, 1998. 10
- 日本公認會計士協會, 「連結財務諸表における稅効果會計に関する實務指針(中間報告)」, 會計制度委員會報告 第6号, 1998. 5.
- \_\_\_\_\_, 「持分會計に関する實務指針」, 1998. 7.
- \_\_\_\_\_, 「個別財務諸表における稅効果會計に関する實務指針」(會計制度委員會報告 第10号), 1998. 12.
- \_\_\_\_\_, 「中間財務諸表における稅効果會計に関する實務指針(中間報告)」, 會計制度委員會報告 第11号, 1999. 1.
- \_\_\_\_\_, 「稅効果會計に関するQ&A」(JICPAジャーナル), 1999. 3.
- 梶原 晃, 『稅効果會計』, 神戸大學經濟經營研究叢書17, 1995.
- 手塚仙夫, 『稅効果會計の實踐』, 清文社, 1999.
- 中瀬宏通・鮎川眞明, 『持分會計・稅効果會計の實務』, 稅務經理協會, 1978.
- 中田信正, 『稅金配分會計』, 中央經濟社, 1973.
- \_\_\_\_\_, 『稅効果會計詳解』, 中央經濟社, 1999.
- 中田信正・坂本道美, 『稅効果會計入門理論の實際』, 中央經濟社, 1999.
- 弥永眞生・足田浩, 『稅効果會計』, 中央經濟社, 1997.
- 森田政夫, 『稅効果會計と法人稅』, 中央經濟社, 2000.
- 澤昭人・紅林優光, 『稅効果會計』, 東洋經濟新聞社, 1999.
- 五十嵐則夫・釘嶋達郎, 『稅効果會計ハンドブック』, 中央經濟社, 1999.
- 長岡勝美・齊藤伊知郎, 『中小企業のための稅効果會計』, 中央經濟社, 2000.
- 日本公認會計士協會京滋會, 『稅効果會計入門Q&A』, 清文社, 1999.
- 中島岡晴, 『2000年の會計』, 中央經濟社, 2000.
- 中央經濟社 編, 『會計法規集』 第1版～第13版, 1999.

齋藤眞哉, 『税効果會計論』, 森山書店, 1999.

野村健太郎, 『連結會計基準の國際的調和』, 白桃書房, 1999.

中央經濟社, 『企業會計』, 1970年 1月号~2000年 7月号.

森山書店, 『會計』, 1970年 1月号~2000年 7月号.

産業經理協會, 『産業經理』, 1990~1999.

朝日監査法人 編, 『會社の決算と開示 '97』, 東京, 中央經濟社, 1997.

松下電器産業(株), 『有價證券報告書總攬』, 1994年 3月.

法務省・大藏省共同研究會, 「商法と企業會計の調整に関する研究會報告書」, 1998年 6月 16日.

日本經濟新聞, 「資本押し上げる6兆6000億円・税効果會計導入で主要行」, 1999年 5月 25日字 決算公告特集.

日本經濟新聞, 1999年 6月 26日および同30日字 記事

日本經濟新聞, 「資本押し上げる6兆6000億円・税効果會計導入で主要行」, 1999年 5月 25日字 決算公告特集.

日本經濟新聞, 1999年 6月 26日および同30日字 記事